전략·ESG위원회 규정

2024. 12. 12.



제 1 조 (목 적)

- ①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전략·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(기 능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에 따라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사전심의기구로서, 전략(Strategy) · 환경(Environment) · 사회적 가치 (Social Value) · 회사의 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과 회사의 재무적·비재무적 Risk를 검토·분석하여,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 또는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사외이사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해당회의 또는 워크샵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다.

제 3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 및 사외이사 아닌 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)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 중 1인으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또는 토의한 사항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

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 자인 위원이 주재한다.

④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 5 조 (소 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 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

제 6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 (사전검토 사항)

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사회의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 부여 내용에 근거하여 이사회 의결에 앞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,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토의 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.

- 1. SK그룹(이 규정에서 'SK그룹'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SKMS를 근간으로 한 경영철학을 공유하고, 경영활동에 상호 협력 하기로 합의한 회사들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을 의미함)의 주요 경영 전략에 관한 사항
- 2. 회사의 산업별 사업 추진 전략
- 3. 회사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
- 4. 회사의 재무적·비재무적 Risk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
- 5. 기타 회사의 전략, 평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
- 6. SKMS 등 SK그룹(이 규정에서 'SK그룹'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SKMS를 근간으로 한 경영철학을 공유하고, 경영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회사들로 구성된 회사들의 집합을 의미함)의 경영원칙에 관한 사항
- 7.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방안
- 8.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현안 등 위원장 또는 회사가 토의를 요청한 사항
- 9. ESG 주요 활동에 대한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(이 규정에서 ESG는 환경/기후변화대응, 정보보안, 안전보건, 인권, 공급망, 리스크 관리 등 ESG 전반을 의미함)

제 9 조 (자료제출 요구권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 게 위원회 출석, 관련자료의 제출,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간사조직)

- ① 위원회의 간사조직은 [전략기획담당]으로 한다.
- ② 간사조직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 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2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21. 3. 30.)

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 3. 29.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 12. 12.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